#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76

발의연월일: 2025. 1. 23.

발 의 자:문금주·권칠승·이학영

한민수 · 신영대 · 문정복

김문수 · 안도걸 · 이정문

서삼석 • 박용갑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사회로 하여금 경마를 개최할 때 마권을 발매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1인 1회 구매한도액(10만원)을 「승마투표약관」에서 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현금구매, 마권발매기 등을 이용하면 무제한으 로 마권의 구매가 가능한 상황임.

그런데도 마사회는 구매자의 구매한도액 초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간헐적으로 현장을 지도·감독하여 적발한 구매상한 위반 건수는 매년 수천건 이상 급증하고 있음에도, 마사회의 적절한 이용자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마사회로 하여금 구매자에 대하여 1회에 10만원 이내로 마권을 발매하도록 함으로써 구매자의 과도한 베팅 자제로 건전하게 경마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마사회는 구매자에 대하여 1회에 10만원 이내로 마권을 발매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제1항제2호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입장료) ① 마사회는 경마	제5조(입장료) ①		
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및	<u>利</u>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6조제3항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마권의 발매 등) ① (생	제6조(마권의 발매 등) ① (현행		
략)	과 같음)		
<u>&lt;신 설&gt;</u>	② 마사회는 구매자에 대하여		
	1회에 10만원 이내로 마권을		
	발매하여야 한다.		
<u>②</u> · <u>③</u> (생 략)	③· <u>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제44조의2(경마감독위원회 설치	제44조의2(경마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경마 시행과 관련	및 운영) ①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소속으로 경마감독위원회를			
둔다.	<u></u>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	2. <u>제6조제3항</u>		
소의 설치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